

<p>하다.</p> <p>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대학교수 또는 전문가</p> <p>2. 시의회 의원</p> <p>3. 경제단체의 관계자</p> <p>4. 기업인 또는 기업단체의 임직원</p> <p>5. 실업문제와 관련되는 시민단체</p> <p>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p>
<p>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업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적인 취업정보망 구축에 관한 사항 2. 실효성있는 직업훈련체계·방법·훈련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생산직·일용직 등의 실업자에 대한 대책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사무직·전문직 등의 실업자에 대한 대책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대졸미취업자 등의 취업희망자에 대한 문화·환경분야의 고용추진 등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실업대책 관련 주요시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고용창출방안 등 실업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9. 기타 주요 실업대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부의하는 안건 <p>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업문제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p>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과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조(위원회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실업대책을 주관하는 국장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시장에의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p>③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제1항 및 제2항의 간사와는 별도로 자문 및 연구활동 간사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 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이 된다. ②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 행정기관·지방공기업 등의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p>

<p>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 8 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 9 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p> <p>서울특별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수정안</p> <p>의안번호 44번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2조제2항 “지역경제국”을 “산업경제국”으로, 제6조 “지역경제국”을 “산업경제국”으로, 안 제9조6호를 삭제한다.</p> <p>안 제2조(실·국·본부의 설치) 2 서울특별시에</p>	<p>행정관리국·보건복지국·산업경제국·문화관광국·환경관리실·소방방재본부·도시계획국·교통관리실·건설국 및 주택국을 둔다.</p> <p>안 제6조, 제9조 및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안 제6조(산업경제국) 산업경제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로</p> <p>안 제9조(소방방재본부) 소방방재본부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상황실 운영</p> <p>2~5호(생략)</p> <p>6호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생략)</p> <p>②(행정기구의 폐지·신설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중 “기획관리실”은 “기획예산실”로 보고, “기획관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보며, “내무국” 또는 “재무국”은 “행정관리국”으로 보고, “내무국장” 또는 “재무국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보며, “보건사회국” 또는 “가정복지국”은 “보건복지국”으로 보고, “보건사회국장” 또는 “가정복지국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보며, “지역경제국”은 “산업경제국”으로 보고, “지역경제국장”은 “산업경제국장”으로 보며, “문화국”은 “문화관광국”으로 보고, “문화국장”은 “문화관광국장”으로 보며, “민방위재난관리국” 또는 “소방본부”는 “소방방재본부”로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방재본부장”으로 보며, “도로국” 또는 “하수국”은 “건설국”으로 보고, “도로국장” 또는 “하수국장”은 “건설국장”으로 본다. 다만, 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국”은 “소방방재본부”로 보고, “지역경제국장”은 “소방방재본부장”으로 본다.</p> <p>③(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p>
--	---